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환 경 교 육 진 흥 법 시 행 규 칙
전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교육을 학교,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(법률 제17854호, 2021. 1. 5. 공포, 2022. 1. 6. 시행)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률의 제명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「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을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함(제명).
- 나.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다.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, 지정 유효기간(3년) 등을 정함(안 제3조)
- 라.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(안 제4조)
- 마.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,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, 보수교육 대상, 교육 방법·기간 및 유예, 양성기관의 지정절차,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
바.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, 유효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, 지정표시, 사후관리,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
사.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추가,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,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

아.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, 지정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1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

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
2.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운영, 간사 및 수당·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실무위원회”로 본다.

제3조(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) ① 환경부장관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(이하 “환경교육 우수학교”라 한다)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정도
2.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
3.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현황

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2. 그 밖에 환경교육관련 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3.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며,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④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4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(이하 “사회환경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및 자격
2.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해당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계획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,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(환경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)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헛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환경교육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7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·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
3.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
4.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

5.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(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말한다)

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,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자 명단·시간·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·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(解消)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수교육 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⑦ 보수교육의 절차·내용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 기관이 정한다.

제8조(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) ①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
1. 기관 운영계획서
2.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
3. 강의실,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

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“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”란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)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양성기관이 이 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0조(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(이하 “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구성·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
 2.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
-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,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,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(연장)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.
-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연장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신청·지정 및 사후관리 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)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별표 4와 같다.

제12조(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③ 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개발·운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3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)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·보급
2.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

3.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지원
4.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 및 지원
5.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화 업무

제14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절차) ①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
2. 영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·장비·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.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

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6조(환경교육도시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(이하 “환경교육도시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이 우수할 것
2. 환경교육 현황 및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
3. 환경교육도시의 성과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

②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기반에 관한 사항
2.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⑤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(제6조와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1호	자격취소
2.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2호	자격취소
3.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3호	자격취소
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가. 1차 위반 나. 2차 위반	법 제17조제1항제4호	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

비고: 처분권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,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별표 2]

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방법 및 시간(제7조제2항 관련)

1. 교육방법

가.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(숙박 또는 비숙박)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2. 교육기간(시간)

가.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 마다 1일(7시간)

나. 환경교육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종사한 날부터 3년 마다 1일(7시간)

비고: 1.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.

2.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퇴사한 후 다른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[별표 3]

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1호	지정취소
2.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2호	지정취소
3.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. 1차 위반 나. 2차 위반	법 제20조제1항제3호	경고 지정취소

[별표 4]

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(제11조 관련)

1. 지정표시



지정번호 제 호
환경부

2. 작도법

- 가.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, 원형 중앙 도형은 정부 심볼마크를 사용하며, 윗부분에는 지정명칭을, 아랫부분에는 환경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한다.
- 나.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.
- 다.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색상(도형 및 문자)은 정부 심볼마크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하고,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.

[별표 5]

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기준(제12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조항	행정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1호	지정취소
2.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. 1차 위반 나. 2차 위반	법 제22조제1항제2호	경고 지정취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교육팀	
연 락 처	(044) 201 - 6532